임실군의회 공고 2021 - 38호

「지방자치법」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임실군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게재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2. 1.

임실군의회 의장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임실군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 1. 13.시행)에 따라 조례로 규정할 위임사항 및 개정 조문을 반영하여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변경된 인용 조문 변경

연번	조 례 명	비 고
계	7건	
1	임실군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2	임실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	
3	임실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4	임실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5	임실군의회 위원회 조례	
6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7	임실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3. 참고자료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

1) 심사예고 : 5일 간

2) 비용추계서: 해당없음(미첨부 사유서 붙임)

3) 관련법령 발췌문: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임실군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주소: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이도리), 우편번호: 55927, 전화: 063)640-2883, FAX: 063)640-2169, E-mail: jh030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임실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임실군 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의 개정)

임실군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임실군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를 "임실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90조 및 제91조"를 "제41조, 제102조, 제103조"로, "임실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를 "임실군의회"로,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를 "정수"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제5조 및 제6조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정책지원관) 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과에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종전의 제4조) 중 "의회"를 "임실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로, "정원"을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로 한다.

제2조(「임실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의 개정)

임실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8조"를 "제46조"로 한다.

제5조제4호 중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해"를 "남용하여"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35조제1항"을 "제4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5항) 중 "군 의회"를 "임실군의회"로, "공개할 수 있다"를 "공개해야 한다"로 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의원은 군, 「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제24조의 제목 "(관리인 등 겸직 금지)"를 "(겸직 금지)"로 한다.

제2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군이 출자·출연(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단체
2. 군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3. 군으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
4.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에 해당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권고할 수 있다"를 "권고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제24조제2항(종전의 제4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않을 때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별지 제1호 서식](제8조제2항 관련)

임실군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			선거구분	지 역 구	
성명	한 글			비례대표	
	한 자		생년월일		
겸직내용	기관·단체명				
	직 위		기간	~	
	수행업무내역				
	분 야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			
	영리성 여부	영리 □, 비영리 □			
	보수수령 여부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			
	보수 수령액 (연간)	**근로소득**	원		
		근로소득 이외 소득	원		
		계	원		
	주 소		전화번호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임실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임실군의회의원 (인)

임실군의회의장 귀하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

<table>
<tr><td colspan="2">소속정당</td><td></td><td rowspan="3">선
거
구
분</td><td>지 역 구</td><td></td></tr>
<tr><td rowspan="2">성
명</td><td>한 글</td><td></td><td>비례대표</td><td></td></tr>
<tr><td>한 자</td><td></td><td colspan="2">생년월일</td><td></td></tr>
</table>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임실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임실군의회의원 (인)

임실군의회의장 귀하

제3조(「임실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임실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를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로, "임실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임실군의회 의원"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임실군 공무원"을 "임실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4조 중 "의원"을 "임실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공무"를 "공무"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일 비"를 "일비"로 한다.

제7조 중 "제33조제1항제2호"를 "제36조제2항"으로 한다.

제9조 중 "임실군"을 "의회"로 한다.

제4조(「임실군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임실군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임실군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임실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를 "「지방자

치법」 제51조"로, "임실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임실군의회"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회"를 "임실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법 제117조"를 "법 제131조"로 한다.

제5조(「임실군의회 위원회 조례」의 개정)

임실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6조"를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로 한다.

제8조제3항 전단 중 "「지방공무원법」 제31조"를 "「지방공무원법」 제31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같은 법 제6장"을 "「지방공무원법」 제6장"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윤리심사"를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17조 중 "「임실군의회 회의규칙」"을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으로 한다.

제6조(「임실군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임실군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임실군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의 규정에 의하여 임실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에 따라 임실군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의회는 임실군”을 “임실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감사”를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조사”를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의”를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로, “제117”을 “제131”로, “제120조”를 “제134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146조”를 “법 제163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법 제104조제2항”을 “법 제11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본문 중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의3제3항 중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7조(「임실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임실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4조 내지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하여"를 "제53조 · 제54조 · 제56조에 따라"로 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총선거"를 "지방의회의원 총선거"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의장은 군수나 제적의원의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 이 때 임시회는 제2조의 규정에따른 회의일수 범위에서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수시 집회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134조"를 "법 제15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41조제1항"을 "법 제49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 중 "「임실군의회 회의규칙」"을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1 임실군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현 행	개 정 안
임실군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임실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실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41조, 제102조, 제103조- -------- 임실군의회------- ---------- ---------- ---------- 정수 - ---------- ---------- ----------.
<신 설>	제4조(정책지원관) 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과에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4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정한다.	제5조(직원의 정원) 임실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는 ----------.
제5조 (생 략)	제6조 (현행 제5조와 같음)

2 임실군의회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8조에 따라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제46조---------- ---------- ---------- ---------- ---------- ---------- ---------- ---------- ---------.
제5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4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5조(윤리실천규범)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해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 된다.	4. ---- 남용하여 ---------- ---------- ---------- ---------- ---------- ---------- --.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제8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 제35조제	제8조(겸직신고) ① ---------- --- ----------제43조

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제1항 ---------- ---------- ---------- ---------- ----------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4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삭 제>
⑤ 의장은 겸직 현황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 1회 겸직 신고를 안내하고 내역을 점검 후 군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내역을 공개할 수 있다.	④ ---------- ---------- ---------- 임실군의회 ---------- ------- 공개해야 한다.
제9조(영리행위의 제한)	제9조(영리행위의 제한) ① 의원은 군, 「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신 설>	
(생 략)	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제24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제24조(겸직 금지) ① 의원은 다음

의원은 군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각 호의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군이 출자·출연(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단체 2. 군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3. 군으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 4.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② 제1항의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군이 출자·출연(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단체 2. 군이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3. 군으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삭 제>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	
③ 제1항의 관리인이란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임직원을 말한다.	<삭 제>
④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권고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한다.
<신 설>	1. 제1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않을 때
<신 설>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3 임실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실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	제1조(목적) ----------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임실군의회 의원----------

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
제2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기준 및 시기) ①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은 별표 1의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매월 임실군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생 략)	제2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기준 및 시기) ①---------- ---------- ---------- 임실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여비의 지급) 의원이 회기 중 의회의 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 여비를 지급한다.	제4조(여비의 지급) 임실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 ---------- ---------- 공무- ---------- ----.
제5조(여비의 종류) ①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② (생 략)	제5조(여비의 종류) ①--------- ---------- ---------- ---------- ---------- 일비 ----------.
제7조(여비지급기준) 여비는 「지	제7조(여비지급기준) ----------

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제2호에 따라 별표 2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제36조제2항----------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임실군 지방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제9조(준용) ---------- 의회 ----------

4 임실군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임실군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임실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실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51조---------- 임실군의회 ----------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2조(범위) 임실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의	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4. (생 략) 5. 법 제117조의 하부행정기관의 장	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 4. (현행과 같음) 5. 법 제131조----------

5 임실군의회 위원회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6조에 따라 임실군의회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제8조(위원회의 전문가 활용) ①·② (생 략) ③ 자문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하며, 위촉된 업무의 성질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복무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제6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⑤ (생 략)	제8조(위원회의 전문가 활용)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지방공무원법」 제6장----------.
제15조(특별위원회 설치) ①·② (생 략)	제15조(특별위원회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삭 제>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운영, 의사 등에 관한 사항은 「임실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준용규정) ---------- ----------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

6 임실군의회 행정 및 조사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의 규정에 의하여 임실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에 따라 임실군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 ---------- ---------- ---------- ----------.

제2조(감사) ①의회는 임실군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한다. ②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감사위원회가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③ ~ ⑤ (생 략)	제2조(감사) ①임실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②-----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조(조사) ①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 ② ~ ⑦ (생 략)	제3조(조사) ①----------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 략) 2.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실군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17 조 및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 3. 임실군이 설치한 법 제146조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 ---------- 제131 ---- 제134조---------- 3. ---------- 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
4. 법 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법 제117조제2항 ---------- ---------- ---------- ---------- ---------- -. ---------- ---------- --.
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임실군이 4분의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만 임실군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의3(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② (생 략)	제9조의3(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	③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 ---------- ---------- ----------

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실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준하여 일비와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 ---------- --.

7 임실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내지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임실군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제54조·제56조에 따라 임실군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집회) ①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중에 집회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신 설>	제4조(집회) ① ---------- ----------. -----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 ----------. ②·③ (현행과 같음) ④의장은 군수나 제적의원의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 이 때 임시회는 제2조의 규정에따른 회의일수 범위에서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수시 집회할 수 있다.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34조 규정에 의한 전년도 결산안, 기타 의회에 부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②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다음년도 예산안과 기타 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군수로부터 다음년도의 군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 ③ (생 략)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법 제150조 ----------. ②---------- 법 제49조 제1항----------.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실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준용) ----------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겸직 등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원
2. 헌법재판소 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7.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②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③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해당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⑤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단체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3.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
4.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⑥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제5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⑦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의 행위 또는 양수인이나 관리인의 지위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제한되는지와 관련하여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4조(의원의 의무) ①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④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1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

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102조(사무처 등의 설치) ① 시·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②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및 직원(이하 제103조, 제104조 및 제118조에서 "사무직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부칙 제6조(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규모에 관한 특례)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는 경우 그 규모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도입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의정활동비 : 별표 5에 따른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37조에서 "심의회"라 한다)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
2. 월정수당 : 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하되, 심의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

②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는 별표6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③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38조(정책지원관의 직무 등) ① 법 제41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정책지원관이라고 한다

②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③ 지방의회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외의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 수 없다.

④ 정책지원관의 직무범위 및 직무 제한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2항 및 제3항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⑤ 정책지원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64조에 따른 위원회 또는 제102조에 따른 사무처 등에 둔다.

⑥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정책지원관의 신규임용, 파견, 전보 등 임용절차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적용한다.